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지권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2107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. 11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. 21.

2. 제안사유

- 본 조례안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변경하고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도시철도 내 위생, 방역에 관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
-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

3. 주요내용

- 가.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(안 제21조의 3)
- 나.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단하는 경우 운송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(안 제21조의 4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철도안전법」,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1. 26. ~ 2021. 2. 2.

○ 제출의견 : 있음

제출자	주요의견	처리결과
김00	학교현장 상황 고려 및 공공도서관의 역할 침범, 운영인력 등 방학기간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사항 검토	미반영 -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수정 가결

- 동 조례 제19조, 제21조 등에서 이미 “도시철도”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, 조례규정의 통일성을 위해 제21조의 2 본문변경은 수용
- 여객의 권리·의무 및 여객운송 조정 조항 신설은 동 조례 제1조에서 ‘서울교통공사의 설립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’한다고 되어있어, 일반 이용객의 권리·의무를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

1) 도시철도과-1174호(2021.1.29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운송거부 및 승객하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여객의 권리와 의무 관련(안 제21조의3)

-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객의 권리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및 전염병 관련 시책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
- 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²⁾에서는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「도시철도법」 제4조³⁾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해서는 「철도안전법」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철도안전법」 제47⁴⁾조에서는

2) 지방공기업법 제49조(설립)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3) 도시철도법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「철도안전법」을 적용한다.

“다른 이용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지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
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 제2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정해진 안전수칙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

■ 여객운송의 조정 관련(안 제21조의4)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따르지 않아 위생,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
4) 철도안전법 제47조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)

-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
 2.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
 3.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
 4. 흡연하는 행위
 5.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
 6.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
 7.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법률」이 '20년 8월 12일에 개정⁵⁾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

- 또한 「철도안전법」 제49조⁶⁾에서는 철도의 안전·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, 이를 어길 경우 퇴거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⁷⁾을 마련하고 있음
- 한편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철도안전법」 등에서 명시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 등으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동 개정조례안이 여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
- 하지만, “조례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,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

5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
-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<법률 제17475호, 2020. 8. 12, 일부개정, 시행>

6) 철도안전법 제49조(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)

-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·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② 누구든지 폭행·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7) 철도안전법 제50조(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)

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.

7.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

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,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.”는 헌법재판소 판결⁸⁾ 및 “국가법령이 조례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”는 대법원 판결⁹⁾을 고려할 때

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운송거부와 여객하차를 규정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과 선량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

- 참고로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강화 현실을 반영하여 「도시철도법」 제32조¹⁰⁾에 따라 동 조례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「여객운송약관」¹¹⁾을 변경·시행¹²⁾하고 있음

8) 헌법재판소 1995. 4. 20 선고 92헌마264, 279호 판결

9)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추244판결 등)

10) 도시철도법 제32조(도시철도운송약관)

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,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<후략>

11) 여객운송약관 제6조(여객운송의 조정)

③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·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,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.

16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<신설>

12)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제2020-3회('20.5.29.) 제11호(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 규정안) : 수정의결 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하여 운송거정 및 퇴거조치 추가 반영